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64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 참고자료                             |    |
| 1.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 | 8  |
| 2.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 ..... | 9  |
| 3.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현황 .....         | 10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1. 15.
3. 회 부 일 : 2026. 1.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게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투자계획상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br>-----<br>-----<br>-----<br>-----.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7. -----해제 및 해지에-----                                                             |
| 8. (생략)                                                                                                  | 8.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신설>                                                                                                     |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 |

1) 종합계획심의회

(위원) 위원장(도지사) 1명, 부위원장(부지사 1명 포함) 2명 등 23명 이내  
(심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현행                           | 개정안                                                                                                                                 |
|------------------------------|-------------------------------------------------------------------------------------------------------------------------------------|
|                              | <p><u>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p> <p>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p> <p>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p> |
| 부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금액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등 법정 기준<sup>2)</sup>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sup>3)</sup>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sup>4)</sup>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 2) <개별형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

- 총 투자금액 2,000만 달러 이상: 호텔업(카지노업, 보세판매장 제외), 휴양업(골프장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제외),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 시설업, 관광 식당업 등
- 총 투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상: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교육원, 자율학교, 국제학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첨단기술활용산업, 연구개발업, 식료품·음료제조업, 화장품제조업 등

## <단지형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

- 총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 2/3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개별형과 동일한 27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 가능

## 3)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4) 참고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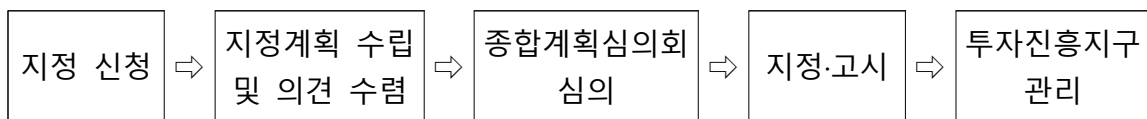
도모하려는 제도임.

투자금액·업종·입지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정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이후에는 반기별 투자실적 보고 및 점검·조사를 통하여 사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sup>5)</sup>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요 >

- **(설치목적)** 특정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투자자와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 **(법적근거)**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63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
- **(인센티브)** 국세(소득·법인세), 지방세(취득·재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 **(행정부담)** 투자자의 연 2회 투자실적, 고용현황 보고의무 등

####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 >



그런데 현행법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종료할 수 있는 명시적인 ‘해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sup>6)</sup> 투자

5)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해제(解除)**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

**해지(解止)** :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으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계획을 모두 이행한 이후에도 법령상 해제 사유<sup>7)</sup>가 발생하지 않는 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정한 반기별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보고 등 관리·점검 의무<sup>8)</sup>가 계속 적용될 수 있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일정 시점 이후에는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sup>9)</sup>

이에 개정안은 투자계획상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어 지정 목적이 달성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지정 후 10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재적 성격의 ‘지정 해제’와는 구별되는 ‘지정 해지’ 절차를 도입하여, 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투자자의 보고·실적관리 등 사후 의무를 합리적으로 종결하고 지정 목적이 달성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불이익 없는 종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투자자 모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

7)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8)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② 투자자는 해당 반기의 투자실적, 고용현황 등의 자료를 각각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KBS뉴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등 제도 개선 필요”, 2024.10.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4357>

제주의소리, “‘세금 못 받고 해제도 못하고’ 난감한 제주 투자진흥지구”, 2025.3.13.

<https://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4729>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sup>10)</sup>

다만, 개정안은 제163조의2의 위임 구조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제163조제1항에서 지정 ‘해제’ 사유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sup>11)</sup> 개정안 제163조의2 본문에서는 ‘투자 전부 이행’ 및 ‘10년 경과’라는 지정 ‘해지’의 핵심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지정 해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준과 절차·관리 전반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할 경우 현행법상 지정 해제 규정과의 위임 구조 및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 제163조와 유사하게 지정 해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정 해제 규정과 위임 구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정상적인 종료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지

---

10) 사업의 완료나 지정 목적의 달성을 사유로 지정 효력을 종료시키는 규정을 둔 입법례로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농어촌정비법」상 지역·지구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을 들 수 있음.

11)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정 및 해제 절차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정 해지 절차 등을 도조례에 위임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sup>12)</sup>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관리 부담 및 법적 분쟁 소지 해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감면·추징 체계와의 정합성, 세제 운영의 합리성 및 법적 안정성 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38 |

12) 행정안전부 수정안 예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u>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u>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br><br>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br>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br><br><신 설> |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u>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u>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br><br>1. ~ 2. (개정안과 같음)<br><br>② <u>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u> |

## 참고 1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 □ 지정기준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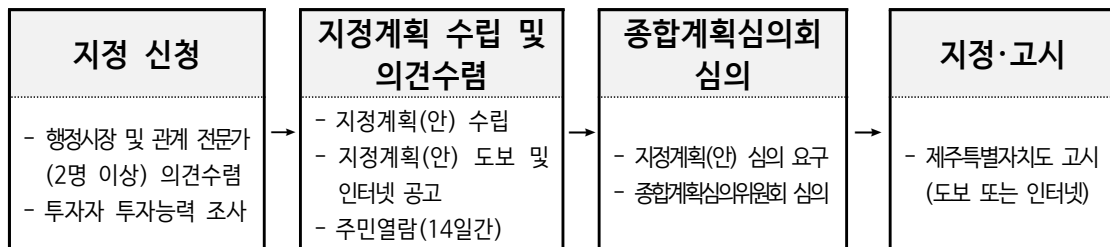
#### 개별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금액: 관광 관련 사업 미화 2천만 달러, 그 밖의 사업 5백만 달러
- 법적근거: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 사전조건(이행사항)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을 받은 사실
- 대 상 자: 새로이 투자하는 내·외국인

#### 단지형 : 기업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 법적근거: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
- 사전조건: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역
-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 출자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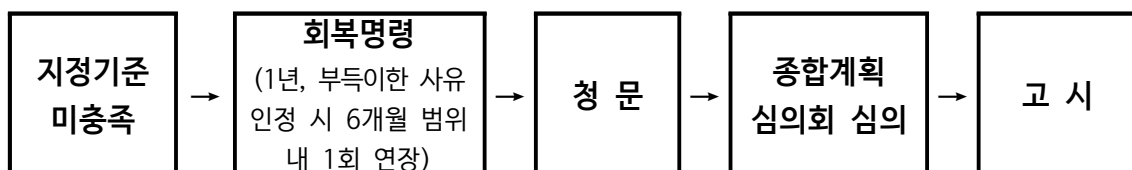
### □ 지정절차



### □ 지정해제 기준 (2020. 6. 11. 이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신청한 경우에 한함)

- (개별형)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미완료할 경우
- (단지형) 투자이행기간 내 투자를 미완료한 경우

### □ 지정해제 절차



## 참고 2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

### ○ 국 세

| 구 분 | 감 면                               | 감면근거            |
|-----|-----------------------------------|-----------------|
| 법인세 | - 입주기업: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 소득세 | - 개발사업시행자: 3년간 50%, 다음 2년간 25% 감면 |                 |

### ○ 지방세

| 구 분 | 감 면                                                                                                        | 감면근거                       |
|-----|------------------------------------------------------------------------------------------------------------|----------------------------|
| 취득세 |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 사업<br>: 지정일로부터 5년간 75% 감면<br>-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 사업<br>: 지정일로부터 5년간 면제   | 제주특별자치도세<br>감면조례<br>제24조의2 |
| 재산세 |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 사업<br>: 기산일로부터 10년간 75% 감면<br>-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 사업<br>: 기산일로부터 10년간 면제 |                            |

※ 기산일: 개별형-지정일, 단지형-지정일 이후 해당 기업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 ○ 각종 부담금

| 구 분           | 감면  | 감 면 근 거                          |
|---------------|-----|----------------------------------|
| 개 발 부 담 금     |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
| 공유수면 점·사용료    | 면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
| 농 지 보 전 부 담 금 | 50%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
| 대 체 초 지 조 성 비 | 50%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15%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57조제6항         |

### 참고 3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현황

(2024년 12월말 기준)

| 연번 | 지구명                       | 위치                     | 면적<br>(천㎡) | 투자계획<br>(억원) | 사업시행자            | 업종    | 지정일        |
|----|---------------------------|------------------------|------------|--------------|------------------|-------|------------|
| 합계 | 전체 44개소                   |                        | 12,311     | 102,086      |                  |       |            |
| 1  | 해비치 관광호텔                  | 서귀포시 표선면<br>표선리 40-76  | 26         | 1,749        | 해비치<br>리조트(주)    | 관광호텔업 | ‘07.6.20.  |
| 2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br>(휘닉스아일랜드)   | 서귀포시 성산읍<br>고성리 127-2  | 632        | 3,870        | (주)휘닉스<br>중앙제주   | 종합휴양업 | ‘08.4.2.   |
| 3  |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 제주시 애월읍<br>소길리 155-19  | 50         | 310          | 새마을금고<br>중앙회     | 연수원   | ‘08.12.31. |
| 4  | 라운더마파크                    | 제주시 한림읍<br>월림리 2365    | 203        | 239          | 라운랜드(주)          | 전문휴양업 | ‘09.3.18.  |
| 5  | 부영호텔                      | 서귀포시 중문동<br>2700-2     | 21         | 1,207        | (주)부영주택          | 관광호텔업 | ‘09.7.1.   |
| 6  | 제주폴로승마리조트                 | 제주시 구좌읍<br>행원리 3260    | 213        | 593          | (주)한국폴로<br>컨트리클럽 | 전문휴양업 | ‘09.7.1.   |
| 7  | 신화역사공원                    | 서귀포시 안덕면<br>서광리 산 35-7 | 3,523      | 33,081       | JDC              | 종합휴양업 | ‘09.12.30. |
| 8  | 오메가파크<br>(메이즈랜드)          | 제주시 구좌읍<br>평대리 3322    | 49         | 93           | (주)비앤지           | 전문휴양업 | ‘10.3.10.  |
| 9  | 한라힐링파크                    | 서귀포시 안덕면<br>상천리 산 70   | 132        | 998          | (주)휘찬            | 전문휴양업 | ‘10.3.10.  |
| 10 | 제주헬스케어타운                  | 서귀포시 동홍동 2032          | 1,452      | 13,587       | JDC              | 종합휴양업 | ‘10.11.3.  |
| 11 | 라운프라이빗타운                  | 제주시 한림읍<br>협재리 산149-6  | 783        | 4,050        | 라운레저<br>개발(주)    | 전문휴양업 | ‘11.4.11.  |
| 12 | 삼매봉밸리유원지                  | 서귀포시 호근동 399           | 89         | 2,293        | 삼매봉개발(주)         | 전문휴양업 | ‘11.4.11.  |
| 13 | 판타스틱트랙아트유지엄<br>(박물관은살아있다) | 서귀포시 섕달동<br>2547-2     | 30         | 105          | (주)트랙아트<br>유지엄   | 전문휴양업 | ‘11.7.22.  |
| 14 | 제주해양과학관<br>(아쿠아플라넷)       | 서귀포시 성산읍<br>고성리 127-1  | 94         | 1,226        | (주)제주<br>해양과학관   | 전문휴양업 | ‘12.2.20.  |
| 15 | 제주영어교육도시                  | 서귀포시 대정읍               | 3,791      | 19,256       | JDC              | 국제학교  | ‘12.7.4.   |
| 16 | 제주유지엄컴플렉스<br>(그리스신화박물관)   | 제주시 한림읍<br>금악리 산30-12  | 59         | 228          | 제주유지엄<br>컴플렉스(주) | 전문휴양업 | ‘12.7.4.   |
| 17 | 제주아덴힐리조트                  | 제주시 한림읍<br>금악리 산32-1   | 295        | 2,493        | 아덴힐리조트<br>앤골프(주) | 종합휴양업 | ‘12.7.11.  |
| 18 | 수목원종합미술전시관                | 제주시 연동 1320            | 10         | 129          | (유)수목원           | 문화산업  | ‘12.10.31. |
| 19 | 중앙병원 신제주본원                | 제주시 이호2동 22            | 29         | 517          | 중앙의료재단           | 의료기관  | ‘12.10.31. |
| 20 | 부영리조트                     | 서귀포시 중문동<br>2700-3     | 32         | 1,203        | (주)부영주택          | 전문휴양업 | ‘12.12.31. |

| 연번 | 지구명                      | 위치                     | 면적<br>(천㎡) | 투자계획<br>(억원) | 사업시행자           | 업종           | 지정일        |
|----|--------------------------|------------------------|------------|--------------|-----------------|--------------|------------|
| 21 | 부영청소년수련원                 | 서귀포시 중문동 2218          | 20         | 123          | (주)부영주택         | 청소년<br>수련시설업 | '13.2.22.  |
| 22 | 부영호텔2,3,4,5              | 서귀포시 중문동<br>2725-1 일원  | 294        | 9,179        | (주)부영주택         | 관광호텔업        | '13.2.22.  |
| 23 | 엠버호텔 센트럴<br>(쿠키호텔)       | 제주시 노형동 928-1          | 1          | 110          | (주)예승           | 관광호텔업        | '13.7.17.  |
| 24 | 호텔 빠레브                   | 서귀포시 강정동 173           | 4          | 340          | 호텔빠레브(주)        | 관광호텔업        | '13.7.17.  |
| 25 | GRABEL 호텔                | 제주시 외도일동 401-8         | 2          | 164          | 한성개발(주)         | 관광호텔업        | '13.10.10. |
| 26 | 아스타 호텔                   | 제주시 삼도일동<br>535-10     | 2          | 155          | (주)도림아스타        | 관광호텔업        | '13.10.10. |
| 27 | 호텔 레오                    | 제주시 연동 261-25          | 1          | 149          | (주)의인           | 관광호텔업        | '13.10.10. |
| 28 | WE메디컬리조트                 | 서귀포시 회수동 80            | 30         | 435          | 한라의료재단          | 의료기관         | '13.12.18. |
| 29 | 마레보리조트                   | 제주시 애월읍<br>고내리 41      | 30         | 205          | (주)마레보          | 전문휴양업        | '14.1.28.  |
| 30 | 유니호텔                     | 제주시 애월읍<br>구엄리 1216    | 8          | 152          | (주)유니           | 관광호텔업        | '14.1.28.  |
| 31 | 더 베니스 랜드                 | 서귀포시 성산읍<br>난산리 2570   | 30         | 200          | 이민영             | 전문휴양업        | '14.3.7.   |
| 32 | 헬로키티 아일랜드                | 서귀포시 안덕면<br>상창리 1963-2 | 4          | 99           | (주)제이콤<br>씨앤이   | 전문휴양업        | '14.7.29.  |
| 33 | 제니아관광호텔                  | 제주시 연동 282-20          | 1          | 112          | 김길철             | 관광호텔업        | '14.12.15. |
| 34 | The Cliff Hotel Jeju     | 서귀포시 상례동 623           | 18         | 400          | 예래클리프<br>개발(주)  | 관광호텔업        | '15.4.21.  |
| 35 | 그랜드메르 관광호텔               | 서귀포시 하례동 450-1         | 8          | 135          | 리켄코리아(주)        | 관광호텔업        | '16.1.22.  |
| 36 | 난타파크 관광호텔                | 제주시 오등동 10-1           | 19         | 427          | (주)피엠씨<br>프리덕션  | 관광호텔업        | '16.1.22.  |
| 37 | NH농협은행 제주수련원             | 서귀포시 표선면<br>세화리 1564   | 30         | 599          | 농협은행(주)         | 연수원          | '16.1.22.  |
| 38 | 제주색달동농어촌<br>관광휴양단지(야크마을) | 서귀포시 색달동 1134          | 100        | 493          | (주)블랙야크         | 전문휴양업        | '17.2.23.  |
| 39 | 애월스마트테마파크<br>(9.81파크)    | 제주시 애월읍<br>어음리 산131-3  | 140        | 428          | 모노리스<br>제주파크(주) | 종합유원<br>시설업  | '18.4.10.  |
| 40 | 무민랜드                     | 서귀포시 안덕면<br>상천리 470-6  | 6          | 102          | (주)제이콤          | 문화산업         | '20.8.18.  |
| 41 | 미스터밀크 유가공공장              | 제주시 한림읍<br>금악리 1720-3  | 3          | 82           | (주)미스터밀크        | 식품품<br>제조업   | '22.2.25.  |
| 42 | 제주 리만 빌리지                | 서귀포시 남원읍<br>위미리 4159   | 6          | 142          | (주)리만코리아        | 연수원          | '22.12.30. |
| 43 | 제주 한남녹차가공공장              | 서귀포시 남원읍<br>한남리 1443   | 23         | 428          | (주)오설록농장        | 식품품<br>제조업   | '22.12.30. |
| 44 | 컨택 Asian Space Park      | 제주시 한림읍<br>상대리 282     | 18         | 200          | (주)컨택           | 첨단기술<br>활용산업 | '23.12.29. |

※ 자료: 인베스트제주 홈페이지